

온열질환 예방 대책 솔루션



제품 제안 |

최근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발생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서기에 건설업, 제조업, 야외 작업자, 고령근로자 등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손쉽게 휴대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염 캔디를 개발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 생활, 레저 등에도 매우 좋습니다.

식염 포도당은 휴대하기 불편 하고 날씨에 따라 녹녹해지는 단점에 비해 본제품은 개별포장으로 위생적이고 휴대가 편리하며 간편하게 충전 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많은 땀 배출로 인한 발한으로 줄어든 체내의 염분을 보충하기에 적합한 식염 캔디 입니다. 물과 함께 식염 캔디를 섭취하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염분 섭취로 온열질환 예방

제품 소개 |

- ☞ 명 칭: 파워 업 캔디 (온열질환 예방 식염 캔디)
- ☞ 원재료: 설탕, 물엿, 천일염(국내산)2.6%, 구연산0.35%, 포도당0.339%, 황산마그네슘, 합성향료(레몬향), 합성착색료(식용색소청색1호), 유효제, 탄산칼륨, 가공유지
- ☞ 기 능: - 전해질 보충 (소금, 황산마그네슘, 탄산칼륨 등)
- 수분 보존 촉진
-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
- 형태 알약형 레몬 맛 캔디
- ☞ 권장량: 1일 5~10알 정도 섭취



총 내용량: 100g(4.5g x 23알)

총 내용량: 2.4kg(4.5g x 534알)

주요성분 및 역할 |

주요성분	역할
식염 (국내산 신안천일염)	체내 나트륨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연산	새콤한 맛을 더하고 입 안을 상쾌하게 유지
포도당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탄수화물 제공
레몬향	상쾌한 레몬향으로 기분 좋은 맛 제공
황산마그네슘	영양강화
탄산칼륨	전해질 균형

주요시장 |

- 옥외 근로자 (건설, 농업, 배달, 철강, 제조업 등)
- 스포츠 (바이크, 등산, 골프 등)
- 어린이 및 노약자
- 군경 및 소방관

기대효과 |

- 온열질환 예방 발생률 감소
- 휴대 및 섭취 편의성 (개별포장)

※ 파워 업 캔디는 폭염 시즌 필수적인 전해질 보충제로 간편한 섭취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요 납품실적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 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 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에서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온열질환 예방 제품의 경우, 동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온열질환 예방으로 식염포도당 비치

열사병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파워업캔디

POWER UP CANDY

주요 납품실적

					
					
					
					
					
					
					
					
					
					
					
					
					
					
					
					
					